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표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illegible]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의 생산량 실적표를 제출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투자시설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⑦해당기술 제품 이외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가 ‘여’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투자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기재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생산량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 대상	측정기간	총 생산량	국가전략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 기술	1.반도체 가.	웨이퍼	2022.4.1. ~ 2025.12.31.	000개	000개	000개	000개
2	0000	0000	국가전략 기술	1.반도체 나.	웨이퍼	2022.7.1. ~ 2025.12.31.	00개	00개	00개	00개

3. “⑫종류”란은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4. “⑬기술연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기재합니다.
5. “⑮측정대상”란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기재합니다.
6. “⑯측정기간”란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⑰총생산량”란, “⑱국가전략기술”란, “⑲신성장·원천기술”란, “⑳일반기술”란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기재합니다.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